

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 
예비비지출승인안

# 검 토 보 고 서

1997.10.23

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

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 
**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**

1997.10.23  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교육감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안 : 1997년 8월 29일 제출
- 회부 : 1997년 8월 29일

3. 제안이유

-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건 명 : 손해배상청구소송 합의금
- 지출결정일 : '96.1.20
- 지출결정액 : 91,999천원
- 지 출 액 : 91,999천원
- 지출사유 : 보은중학교 유도부학생 사망 손해배상청구소송 합의금 지급

## 5.검토의견

-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검토한바, 보은중학교 유도부학생 사망 손해배상청구소송 합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